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1. 12. 21.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2월 8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2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2. 1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게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구의원 포함)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 및 운영원칙, 사업 시행 내용(안 제3조~제7조)
-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기능(안 제8조~제11조)
- 영등포구청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정으로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임. 다만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과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을 후생복지제도를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하였음.
- 안 제5조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편의시설, 체력단련실,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휴양소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1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8일

발의자: 이규선 의원 외 8명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게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구의원 포함)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운영에 따른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 사업 시행 내용을 정함

(안 제3조~제7조)

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라. 영등포구청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및 그 자녀의 출생·입학 축하선물 제공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
6.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7. 단체보장보험 가입
8.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비 등 지원
9. 소속공무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10.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후생복지체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서 규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통합운영)** 의장은 영등포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